

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서울시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계약서(이하 “계약서”이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직원”이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원을 말한다 이 경우 중앙회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직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직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산출내역서”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4.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계약예규 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산출내역서, 제안요청서, 계약일반조건 등으로 구성한다.

②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담당직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협회의 서면승인없이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제작자를 변경하거나 공사 이행을 제3자에게 하청할 수 없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직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협회에 귀속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협회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협회에서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협회의 승인없이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계약담당직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협회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협회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공사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 예정표
2. 인력투입계획서
3. 기타 협회가 지정한 사항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공사 계약내용의 변경) 협회의 계약 담당 직원은 공사계약 체결이후에 공사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 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협회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한다.

제14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공사수행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1000분의 1)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협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공사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19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협회의 책임으로 공사착수가 지연되거나 공사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하여 공사수행 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14조제2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협회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수행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협회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협회에 통지하고 필요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②협회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문서등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사유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협회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협회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 ⑤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⑥협회는 검수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수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회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인수) ①협회는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수완료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를 요청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완성된 공사 목적물의 설계도면 등이 포함된 서류 각 5부(원본 파일 포함)
2. 층별 공사진행 및 결과 주요 사진 1부(원본 파일 포함)
3.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 준공내역서(원본 파일 포함) 각 1부
4. 하자보수보증금 및 기타 준공에 필요한 서류

③협회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공사 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공사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일반적 손해)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협회의 부담으로 한다.

제19조(불가항력) ①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협회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협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20조(특허권의 사용) 공사의 수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21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협회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협회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후 그 청구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2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협회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 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은행의 일반자금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수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6조제2항 단서 및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3조(하도급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협회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공사의 일시정지) ①협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의 수행이 계약문서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협회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직원이 지시한 경우

②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제26조(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협회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협회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협회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 제27조(분쟁의 해결)** ①공사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중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협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29조(하자보수)** ①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 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 ②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 ④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0조(하자보수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 ②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계약담당직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협회에 귀속한다.
- ③계약담당직원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면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1조(기타사항) 이 조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회가 별도로 정하거나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